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송도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2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1월 17일
발 의 자: 송도호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원태, 김춘곤, 남창진,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서상열, 성흠제,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우형찬, 유정인, 유정희,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한 신 의원(33명)

1. 제안이유

- 최근 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은 재난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특히, 지역별로 상이한 재난 특성과 환경에 따라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 본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와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재난안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제1조(목적):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
- 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명시
- 다. 제3조(책무): 시장의 책무 명시
- 라.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사 조례 및 관련 조례와의 관계 설정 명시
- 마.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시행):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 명시
- 바.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명시
- 사.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명시
- 아. 제8조(위원회 설치): 심의.자문 위원회의 업무 범위 명시
- 자.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구성 명시
- 차. 제10조(사무의 위탁): 실태조사,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명시
- 카. 제11조(포상):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명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제11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실태조사),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제11조(포상)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6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관련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중복 사용을 지양하고자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자료 중 서울시 재난안전산업 자료 ¹⁾ 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용 추계에서 제외함
2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명확하고 세부적인 분류/범위 및 현황 파악 등의 어려움이 있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필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투입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
4	제11조(포상)	△	재난안전사업과 관련한 포상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편성하는 포상 관련 예산으로 충당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나. 전제

-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제8조의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중 2명을 공무원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6,700천원(연평균 3,340천원)

1) 행정안전부, 「2023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승인통계,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07495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3,340	3,340	3,340	3,340	3,340	16,700
	소계(a)	3,340	3,340	3,340	3,340	3,340	16,7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340	3,340	3,340	3,340	3,340	16,7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6,700천원(연평균 3,34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3,340	3,340	3,340	3,340	3,340	16,700
	소계(a)	3,340	3,340	3,340	3,340	3,340	16,7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340	3,340	3,340	3,340	3,340	16,700

-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 16,700천원
 -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 14,000천원+2,700천원
- 참석수당 = 14,000천원
 -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 200천원×7명×2회×5년

※ 지급인원 : 위원 9명 중 공무원(당연직) 2명은 제외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업무추진경비 = 2,7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9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